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13~213p 4. (1)	개념,공식-설명	4.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의 유형별 검토 (1) 처분이 송달된 경우 <u>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실제로 고시 또는 공고를 보았으면 그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될 것이다. 원고가 실제로 공고 또는 고시를 보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별법령에 효력발생일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개별토지가격결정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각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의 불복제기기간이 적용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u> --- 각주 298) 대판 1995.8.22. 94누5694[전합]	4.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의 유형별 검토 (1)처분이 송달된 경우 <u>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즉,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판례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u> --- 각주 29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39~239p II. 2.	개념,공식-설명	II 심리의 내용 2.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소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또는 <u>각하할 것인지를</u>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II 심리의 내용 2.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소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또는 <u>기각할 것인지를</u>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47~247p IV. 2.	개념,공식-설명	IV 관련 논점 2.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이해한다면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사유(법령이나 사실상태의 변경)를 들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u>다시 할 수 없다.</u>	IV 관련 논점 2.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이해한다면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사유(법령이나 사실상태의 변경)를 들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u>다시 할 수 있다.</u>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